

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(제7조제1항 관련)

1.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

구분	시설의 종류
가. 숙박시설	숲속의 집 · 산림휴양관 · 트리하우스 등
나. 편익시설	임도 · 야영장(야영테크를 포함한다) · 오토캠핑장 · 야외탁자 · 데크로드 · 전망대 · 모노레일 · 야외쉼터 · 야외공연장 · 대피소 · 주차장 · 방문자안내소 · 산림복합경영시설 · 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
다. 위생시설	취사장 · 오물처리장 · 화장실 · 음수대 · 오수정화시설 · 샤워장 등
라. 체험·교육 시설	산책로 · 탐방로 · 등산로 · 자연관찰원 · 전시관 · 천문대 · 목공예실 · 생태공예실 · 산림공원 · 숲속교실 · 숲속수련장 · 산림박물관 · 교육자료관 · 곤충원 · 동물원 · 식물원 · 세미나실 · 산림작업체험장 · 임업체험시설 · 로프체험시설 ·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등
마. 체육시설	철봉 · 평행봉 · 그네 · 족구장 · 민속씨름장 · 배드민턴장 · 게이트볼장 · 썰매장 · 테니스장 · 어린이놀이터 · 물놀이장 · 산악승마시설 · 운동장 · 다목적잔디구장 · 암벽등반시설 · 산악자전거시설 · 행글라이딩시설 · 패러글라이딩시설 등
바. 전기·통신 시설	전기시설 · 전화시설 · 인터넷 · 휴대전화중계기 · 방송음향시설 등
사. 안전시설	울타리 · 화재감시카메라 · 화재경보기 · 재해경보기 · 보안등 · 재해예방시설 · 사방댐 · 방송시설 등

2.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기준

구분	설치기준
가. 숙박시설	1)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2)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,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
나. 편익시설	1)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

	음식점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2)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
다. 위생시설	1)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2)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)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)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
라. 체험·교육 시설	1) 산책로·탐방로·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(안전·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)로 하되, 접근성·안전성·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)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3) 숲속수련장은 강의실·숙박시설·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,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 4)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, 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갖추는 것
마. 안전시설	1) 긴급한 재난·안전사고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추는 것 2) 숙박시설에는 소화설비(소화기, 간이스프링쿨러 등), 경보설비(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), 피난설비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)를 갖추는 것 3)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4)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, 시설의 이용방법, 유의사항 및 비상 시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것

[비고]

1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2.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